

요 약

- ▶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및 어음 지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일부에서 모든 공공공사 대금을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.
 - 예를 들어, 지난 3월 5일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·지방공기업은 하도급 대금을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「국가재정법」·「지방재정법」·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·「지방공기업법」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음.
- ▶ 그러나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는 첫째, 하도급자보다 약자인 현장 근로자·자재공급자·장비업체에게 오히려 대금을 받지 못하게 할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임.
 - 현재는 원도급자는 원도급자, 하도급자, 자재공급자 등 3자가 모인 자리에서 원도급자가 자재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어 하도급자가 부도나더라도 임금·자재비용·건설기계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.
 -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 하에서 발주자가 하도급자의 부실 징후를 예측하기가 어렵고, 만약 발주자가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이후 하도급자가 부도가 나면 현장 근로자·자재공급자·장비업체는 대금을 받을 수 없음.
- ▶ 둘째,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원도급자는 대금을 지급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하도급자에 대한 통제권이 현저히 약화되어 효율적인 공정 관리와 품질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.
- ▶ 셋째, 하도급자가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면 원도급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워지고,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(과잉 금지의 원칙) 원칙에 반하여 위헌적 소지가 매우 높음.
- ▶ 넷째, 하도급 대금 지급 주기의 장기화, 원도급자의 선투입 자재비용 지급곤란 등 공사 비용 흐름의 장애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.
- ▶ 다섯째, 발주처는 수많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추가적인 인력 및 비용이 발생함.
- ▶ 그러므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는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함.
 - 즉, 현재 원도급자가 2회 이상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게 되어 있는 조건을 1회만 대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로 완화하는 것으로 충분함.